



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재입학 **추가모집** 계획(안)

2026. 7.



(춘천교육지원과)

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재입학 **추가모집** 계획(안)

1. 목 적

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에게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업을 마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자 함

2. 근 거

- 가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(재입학)
- 나. 강원대학교학칙 제56조(재입학)
- 다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(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)

3. 재입학 대상 및 제외 대상

가. 재입학 대상 (선발 인원 및 선발 학과는 별도 명시)

- 1) 의원퇴학(자퇴)한 자
- 2) 미등록, 미복학, 미수강, 학사경고, 유급 등으로 제적된 자
- 3) 징계 제적자 중 제적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자

※ 재입학 허가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재입학 허가는 자동 취소됨

나. 재입학 제외 대상

- 1) 재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 ※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(학칙 제56조)
- 2) 당초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되거나 학제가 변경되어 학칙 상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가 된 경우 (단, 모집단위 명칭 단순 변경, 통합, 분리된 학과의 경우 재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부를 학과 또는 전공으로 문의)
- 3) 학칙에 재입학 제외 대상 학과(전공)로 명시된 경우

4. 재입학자 교과 이수 및 교육과정 적용 기준

- 가. 재입학 이전 학사경고 효력 무효
- 나. 재입학 이전 취득학점 모두 인정
- 다. 재입학한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. 단, 상황에 따라 처음 입학한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가능 (학사운영규정 제14조)

5. 재입학 여석 산정 및 선발기준

- 가. 재입학 여석 산정(정원내·외 구분)
 - 2025. 10. 1. ~ 2026. 3. 31. 기간 중 제적된 학생 수에서 2026학년도 일반편입생 수와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한 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(정원내/정원외 구분선발)
 - 일반학과: 산출한 총 여석 범위 내에서 정원내·외 구분 선발
 - 의료인양성학과: 모집단위별, 학년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정원내·외 구분 선발
 - 교원양성학과(사범대학): ①산출기간에 제적생으로 인한 여석이 있고, ②현재 모집단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(학년별 현원(=재적생)이 정원보다 적을 때) 결원된 학년에만 선발

재입학 여석 산정 관련 법령 및 규정·지침

-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(이하 "총정원")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 제28조의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. (모집단위별 입학정원: 학년별 입학정원을 의미함-법제처 해석례 23-1130)
-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,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.
 -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(재입학)제1항 및 제3항
- 교원양성기관(사범대학)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(단, 정원내외 구분)
 - (정원내) 승인정원 결원 시 충원 가능, 단, 결원된 학년에만 충원 가능.
 - ex. 3학년 결원 발생 시 3학년으로만 충원 가능
 - (정원외) 정원외 승인 범위 안에서 충원 가능
 - 교원양성기관 정원(외) 운영 규정(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, '12.11.30.)
 -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(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, '18.11.5.)
 -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

나. 재입학 **추가모집** 가능 여석

구분		모집단위	모집인원(명)		비고
			정원내	정원외	
일반학과 (교원 및 의료인양성학과 제외)		전체학과	84	49	- 외국인 전용학과(정원외) 18명 포함 - 최초 모집인원 94명 중 10명 기 선발
의료인 양성학과	간호대학	간호학과	6	0	- 1학년: 정원내 5명 - 2학년: 정원내 1명
	수의과대학	수의학과(4년)	1	1	- 1학년: 정원내 1명 - 3학년: 정원외 1명
	약학대학	약학과	6	1	- 1학년: 정원내 2명 - 2학년: 정원내 4명, 정원외 1명
	의과대학	의예과	22	0	- 1학년: 정원내 19명 - 2학년: 정원내 3명
교원 양성학과		사범대학	0	2	- 1학년: 정원외 수학교육과 1명 - 3학년: 정원외 영어교육과 1명

※¹ 의학과 여석 없음.

※² 수의예과 학칙에 따른 미선발 (학칙 제56조1항)

※³ 교원 및 의료인 양성학과는 결원을 편입학 및 전과로 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

※⁴ 사범대학의 경우 산출된 여석이 있더라도 학년별, 입학연도별 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, 선발 여부는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「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내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」에 따라 검토 후 승인

다. 재입학 선발기준

-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학과와 그 당시 학년으로 선발
- 재입학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발
 - 1)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
 - 2)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
 - 3) 취득학점이 많은 자

6.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

가. (학생) 재입학 원서 제출

-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다 갖추어 학과에 방문 제출

※ 『학부(과)장 의견서』 작성을 위해 학과사무실로 유선연락 후 방문

나. (학과 또는 전공) 재입학 원서 접수

- 재입학 학생은 제적 전 당시의 학과 소속으로 복적됨을 유의하여, 모집단위 개편(통폐합, 분리 등) 또는 명칭 변경된 학과에서는 재입학 가능 여부 및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상담 및 재입학 원서 접수

※ 사범대학은 여석 내의 지원자가 있더라도 학번에 따라서 선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과는 사범대학 행정실과 논의 후 접수 진행

다. (학과 또는 전공) 학과별 교수회의 의결

- 해당학과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,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대상자들의 재입학 승인 여부를 의결함

※ 승인여부 검토 시 우리 대학 『인권센터』를 통해 대상자의 퇴학 이전 ‘성비위 사실’ 등에 대해 확인 요망

라. (학과 또는 전공) 재입학 승인 결과 보고

- 해당학과는 공문에 **승인결과(가/부)**를 명시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교육지원과로 송부

마. (춘천교육지원과) 재입학 허가

-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총장이 재입학 허가
- 합격자 개별 통보

바. (국제교류과)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

- 합격을 통보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과(춘천), 기획지원과(삼척)에 재정능력입증서류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**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요청**
- 제출기한: 신학기 개강일 2주 전까지

7. 재입학 지원자 제출서류

- 가. 재입학 원서 1부
- 나. 재입학 사유서 1부
- 다. 서약서 1부
- 라. 성적증명서 1부 (신입학 및 편입학 첫학기 수업일수 2/3 이전 제적자 미첨부)
- 마. 학적부 1부
- 바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사. 학부(과)장 의견서(별도 서식 없음) 1부

8.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

- 가. 퇴학 전 '성 비위 사실' 등 확인 시 재입학 승인을 불허할 수 있음
- 나. 군복무 중인 자는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
- 다.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 허가는 취소됨
- 라. 재입학생은 재입학한 첫 학기 휴학 불가(단, 질병 및 입대휴학은 가능)하며, 일반휴학 기간은 학칙 제61조(휴학)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제적 이전 휴학기간에 통산하여 처리함. 즉, 재입학 이전 최대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재입학 후 휴학 불가

9. 재입학 추가모집 업무처리 일정

내 용	기 간	비 고
재입학 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	2026. 7. 20.(월)~7. 27.(월)	지원자→학부(과) 및 전공사무실로 제출 →학(부)과별 서류심사
재입학 승인 결과 보고	2026. 7. 28.(화) ~7. 30.(목) 기한엄수	학부(과) 및 전공→ 춘천교육지원과로 승인 결과 '가/부' 명시하여 보고(공문)
재입학 허가 통보	2026. 8. 5.(수) 예정	춘천교육지원과→학부(과) 및 전공으로 공문 시행 및 재입학자 개별 통보
수강신청	2026. 8. 12.(수)~8. 14.(금)	재입학 허가 승인 학년 해당기간에 직접 신청 (수강문의: 033-250-6017)
등록금 납부	2026. 8. 25.(화)~8. 28.(금)	등록금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 (납부분의: 033-250-7054)

※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